

예 산 총 칙

2020년도 추경 4 회

제 1 조 2020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| 구 분 | 세입·세출예산총액 | 일시차입한도액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합 계 | 444,536,757 | 13,336,103 |
| 일반회계 | 399,924,094 | 11,997,723 |
| 특별회계 | 44,612,663 | 1,338,380 |
| 공기업특별회계 | 12,471,519 | 374,146 |
|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| 12,471,519 | 374,146 |
| 기타특별회계 | 32,141,144 | 964,234 |
| 수질개선 특별회계 | 13,117,644 | 393,529 |
|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 | 520,875 | 15,626 |
| 주택사업 특별회계 | 4,488,471 | 134,654 |
|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| 824,168 | 24,725 |
| 자활기금 특별회계 | 1,915,507 | 57,465 |
| 산업지구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| 9,849,828 | 295,495 |
|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| 936,263 | 28,088 |
|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| 454,669 | 13,640 |
| 기반시설 특별회계 | 33,719 | 1,012 |

제 2 조 세입 및 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 및 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"채무부담행위조서"와 같다.

제 4 조 명시이월사업은 "명시이월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,51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6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(공기업 특별회계 포함)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5,6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최종 추가경정예산 성립 후 국가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하여는 성립된 것으로 간주한다.

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와 재해대책 복구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 할 수 있다.